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학 교 용 지 확 보 등 에 관 한 특 례 법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 ○ ○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 기준 완화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오피스텔 기준 면적을 상향하여 취학유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의 원활한 확보를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제4호 및 별표 1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(안 제1조의2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구조문대비표, 별첨
2) 입법예고 예정
3) 규제심사 예정

대통령령 제 호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2 제1호 중 “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일 것”을 “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제4호 및 별표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 온돌·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 바닥난방이 가능할 것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개발사업 적용례) 제1조의2 개정규정에 따른 오피스텔 개발사업의 경우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3조, 제4조, 제4조의2 및 제5조에 따른 학교용지의 조성·개발·확보, 경비의 부담, 학교시설에 관한 특례 및 부담금의 부과·징수는 이 시행령 시행 이후 허가·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개발사업(사업계획변경에 따라 이 시행령 적용대상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)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의2(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) 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오피스텔”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오피스텔을 말한다.	제1조의2(개발사업에 포함되는 오피스텔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.
1.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일 것	1.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를 초과하고, 「주택법 시행령」 제4조 제4호 및 별표1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중 온돌·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하여 바닥난방이 가능할 것
2.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,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(전용 수세식 화장실에 목욕시설을 갖춘 경우를 포함한다)을 갖춘 것	2. 현행과 같음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지방교육재정과	
연락처	044-203-6529